

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서

[] 1차 — 사용 시기 지정 촉구 [] 2차 — 사용자 지정 통보

성명		소속·직위	
입사일		연차 사용기간	
발생 연차	___일	미사용 연차	___일

1차 통보 시 — 위와 같이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차 통보 시 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셨으므로, 회사가 아래와 같이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.

사용(지정) 일자	

20 년 월 일

사업장명 : _____ 대표자 : _____ (서명 또는 인)

위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근로자 : _____ (서명 또는 인)

작성 기준: 근로기준법 제61조

- 1년 이상 근속자(연차 15일 이상) —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구, 근로자가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2차 통보.
- 1년 미만 근속자(연차 최대 11일) 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구, 끝나기 1개월 전까지 2차 통보.
-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며 구두 안내는 효력이 없습니다.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.